

2.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1년 6월 4일
- 발 의 자 : 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6월 8일
- 상정일자 :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6월 18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병문 의원)

□ 제안이유

- 대구시는 18개 기금 약 1조 3,870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기금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6,228억원 가량이 조성되어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는 재원을 일부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그 적립금을 회수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연도간 재원조정적 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설치된 지방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임.

- 이러한 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의 재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각종 위급상황에서 행정대응능력을 높여주는 제도이기도 함.
- 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범정의무기금이자 그 목적에 따른 적립성기금인 만큼 그 운영규정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됨.
- 따라서, 기금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규정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주요내용

-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3개 조항을 추가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회계상 편의를 위해 1년으로 제한하였으나, 예산 운영권자인 시장이 타 기금 및 예산의 운영상의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9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적립금을 예탁하는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방의 적립성 기금의 일반적인 운용기간임.
- 제10조에서는 예탁금 원리금 상환일을 명확히 하여 행정편의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개정 조례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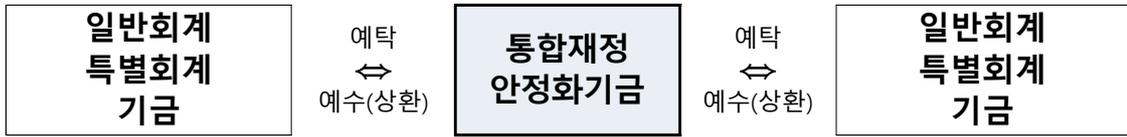
- ▶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에 자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되, 예수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하였음.
- ▶ 안 제9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 안 제10조에서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 분기 마지막 날¹⁾을 원리금 상환일로 지정하여 자금의 정기적인 유통을 통해 여유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1) 1분기 3월 31일 / 2분기 6월 30일 / 3분기 9월 30일 / 4분기 12월 20일 - 예외) 회계연도 종료 고려

《 통합기금 예수·예탁 흐름도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통합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대구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시·도별 통합기금 예탁기간 규정 현황

시·도 별	예탁기간	근거조항	비고
대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9조	
서울	5년 이내	규칙 제5조	규칙 제정중
부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8조	규칙 미제정
인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4조	통합관리기금조례
광주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11조	
대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9조	기금관리기본조례
울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6조	
세종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5조	
경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12조	규칙 미제정
강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7조	
충북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2조	
충남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24조	통합관리기금시행규칙
전북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6조	
전남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16조	기금관리기본조례 규칙 미제정
경북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례 제11조	
경남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7조	
제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15조	

※ 예탁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7개, 2년거치 3년상환 9개, 5년이내 1개 지자체

※ 근거조항 : 규칙 12개, 조례 5개(규칙 미제정 3개) 지자체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이번 조례 개정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 개정 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것을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시의회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상향한 것임.
○ 통합기금의 규모는?	○ 매년 6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개별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예수하고 있으며, 재정운영 상 상당히 중요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음.
○ 통합기금의 예치기관은 어디인지? 농협인지?	○ 대구시 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